동 지침은, 「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」('20.2.3 旣 시행) 및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, 6판)」('20.2.20 시행)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수정·추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
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(2판)

2020. 2. 21

보건복지부

목 차

Ⅰ. 목적 및 기본방향 ····· 1

1. 목적 ····· 1

2. 기본방향 ····· 1

Ⅱ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 ····· 2
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·2
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····· 2

3.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····· 3

4.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····· 4

5. 시설 휴관(원) 시 조치사항 ····· 5

6. 행정사항 ····· 5

Ⅲ. 지자체 협조사항 ····· 5

▷ 붙 임 ◁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 ····· 6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····· 7

3.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····· 9

4.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····· 11

5. 감염병 예방수칙(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) ····· 12

6.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(요약) ····· 13

7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 ····· 14

8. 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(임상기록지) ····· 15

< 참고 >

1. 사회복지시설 종류 ····· 16

Ⅰ 목적 및 기본방향

1. 목 적

□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,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

○ **사회복지시설***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

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
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 요양기관 포함

◈ **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**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, 폐렴,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

□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**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'관리자')의 역할** 등을 제시함

2. 기본방향

□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**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리 체계"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**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, 시설종사자, 기타 방문객을 위한 **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**

□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(의심환자 포함) **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**하고, **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**를 시행

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○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*(시도,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) 간 **비상연락체계 유지**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

* 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

○ 사회복지시설 내 '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**'를 **지정**하여 시설이용자, 종사자,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

○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 수칙, 행동요령 교육
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□ **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**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(동거가족 포함)에 대해서는 **입국 후 14일간*** **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(등원) 중단****

* (예시) 2월 6일 15:00 입국자는 2월 20일(D+14)까지 업무 배제

**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,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

○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**14일간 타인과의 접촉** 및 **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**하고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**스스로 관찰**

*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

○ 시설 내 **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**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**2주간(입국 후 14일) 한시적 업무 배제(유급휴가 처리)**

□ **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**하고 **필요시 진단검사** 실시

□ **시설이용자,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·홍보**

○ 시설 이용자·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[붙임 1~3]

○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*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

* **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**

□ **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**

○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,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

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
○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

- 특히,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*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

*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)

○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

- 종사자,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

○ **의심환자 발생시,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**
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3.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

○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

* **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증상)**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, 폐렴,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

-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(1인 1실)에 격리, 동거인과 대화 등 **접촉 금지, 전용물품**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**사용**하기

○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
* 보건소 도착 전,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

-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·도(보건소)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

*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,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

-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
○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,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

○ **입소자 · 종사자**에 대한 **모니터링(붙임 6)**

-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**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**
- 체온은 아침, 저녁으로 2번 확인
- 체온이 **37.5℃이상**이거나, **호흡기 증상**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

☞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, **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**

***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**

○ **시설 입소 · 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**

-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**(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) 및 **개인위생 준수**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**후 입소 · 출입**하도록 안내
- 시설 내/외부 소독, 공기정화 및 방역 등 **주기적 관리 철저**

○ **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**

-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

4.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

□ 시설 입소자의 **면회·외출·외박 자제 요청 등**

○ 가족 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하여 **면회 · 외박 · 외출 자제요청**

○ 불가피한 경우 **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,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** 할 수 있도록 조치

○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, 밀접접촉 여부,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

□ **이용자,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**

○ 시설 **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**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**실시 후 활동**토록 안내

○ 최근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이 있는 경우 **시설을 이용(방문)하지 않도록** 안내

○ 외부인 방문 제한(방문시간 지정,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(가족 한정 등) 특정), 방문자 리스크 관리, 이용자/방문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(책임자 지정)

□ **행사 또는 교육**

○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

-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, 유사 증상자,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,

-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, 참석자 마스크 착용,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, 예방행동수칙 부착(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 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) 등 조치 선행

5. 시설 휴관(원) 시 추가 조치

□ **휴관(원) 시,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·운영**

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

○ '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' 활용

6. 행정사항

□ **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**

○ **(유급휴가 처리)**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**확진 또는 의심**으로 **격리된 종사자**에 대하여 **치료·격리기간** 동안 **'유급휴가'** 처리('20.1.30. 시달)

○ **(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)**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**돌봄 공백을 방지**하기 위해 **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**을 대상시설에 **우선 투입**('20.1.29. 공문시행)

Ⅲ 지자체 협조사항

○ **(현장지원)**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

○ **(연락체계 구축)** 사회복지시설 의심환자 등 **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**를 위한 관할 **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**

○ **(시설휴관)**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**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**될 수 있도록 **조치** 필요

붙임 1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**

□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민행동수칙**

☑ 일반국민 행동수칙

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
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④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⑥ 특히, 노인·임산부·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

☑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

①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
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
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
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
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
⑥ 경미한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, 관할 보건소·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

붙임 2 |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**

질병관리본부 KCDC

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꼭!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

필수 위생수칙 4가지



비누로 **30초 이상** **꼼꼼**하게 **손씻기**



기침할 땐 **옷소매**로 **입과 코를 가리기**



기침 등 **호흡기 증상** 시 **마스크 착용**하기



의료기관(선별진료소) 방문 시 **해외여행력** 알리기

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·지역에 방문한 경우



외부활동 자제



손씻기, 기침예절 준수



발열, 호흡기 증상 시 **선별진료소*방문** 또는 **관할보건소, 1339, 지역번호+120 상담**

* 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.mohw.go.kr 에서 확인하세요!

발행일: 2020. 2. 20

질병관리본부
KCDC

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꼭!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



국민 여러분!

의료기관 방문 시



코로나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* 이용
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

선별진료소 갈 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,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



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과의 접촉 삼가



의료진 여러분!

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



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



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

(여행력 문진 및 DUR, ITS 활용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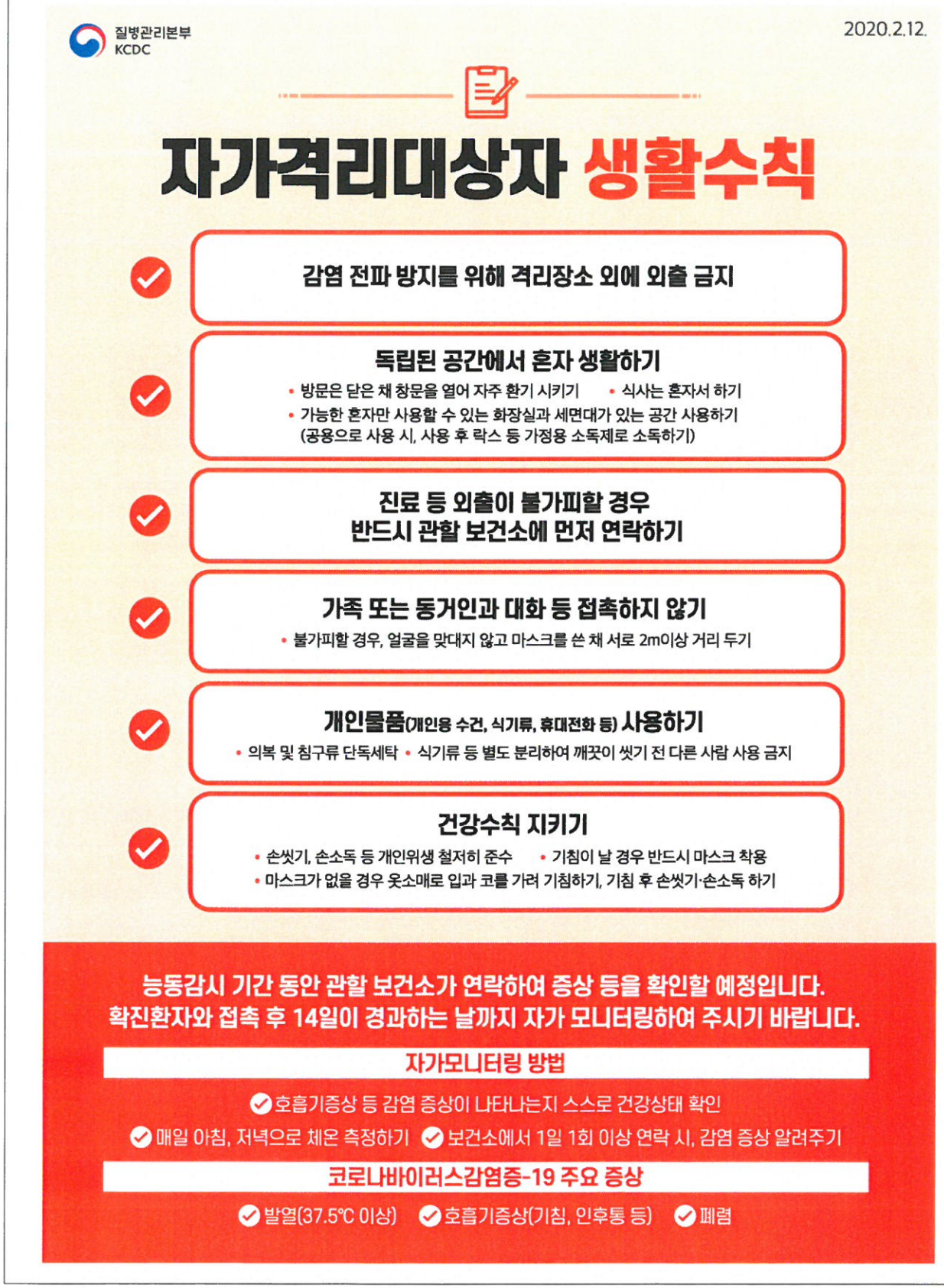


진찰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신고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.mohw.go.kr 에서 확인하세요!

발행일: 2020. 2. 12

붙임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· 동거인 생활수칙



질병관리본부
KCDC

2020.2.12.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- **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**
 -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 • 외부인 방문 제한
- **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**
- **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**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
- **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**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✓ 발열(37.5℃ 이상) ✓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✓ 폐렴

붙임 4 **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**

질병관리본부 KCD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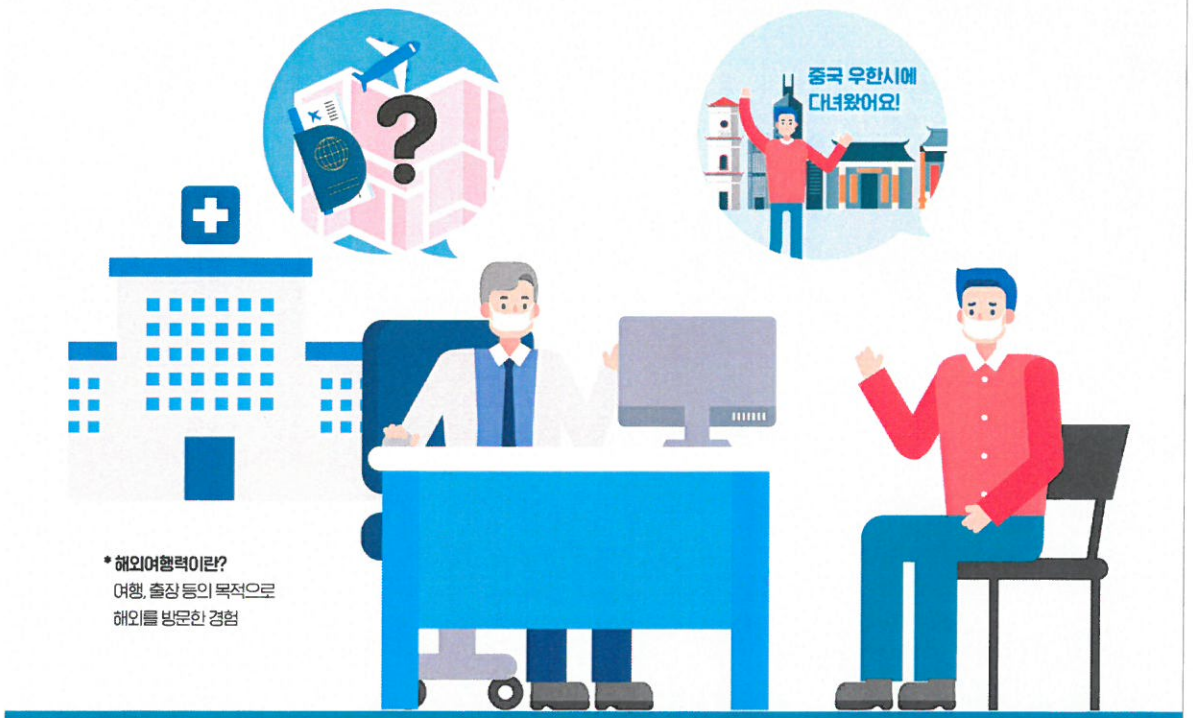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당신의 여행력

모두의 행복을 위해 ✓당당히 말해주세요!

해외여행 후,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
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
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!!!



* 해외여행력이란?
여행, 출장 등의 목적으로
해외를 방문한 경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.hira.or.kr

해외감염병NOW www.해외감염병now.kr

붙임 5 | 감염병 예방수칙(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)

질병관리본부
KCDC

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

붙임 6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요약)

☑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
◈ **환자 노출 장소**는 다음 지침에 따라 **소독을 실시**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**장소 사용 가능**

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(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)

○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,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

○ 청소/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

○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

○ 천(타올)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

*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

○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(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(500ppm~1000ppm))

○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*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

* 엘리베이터 버튼, 손잡이 레일, 문 손잡이, 팔걸이, 등받이, 책상, 조명 조절 장치, 키보드, 스위치 등

○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

○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, 직물,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

○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

○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

○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* 를 소독하고, 천(타올)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/소독 장비는 폐기

*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

○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

<참고>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」 감염 예방 집단시설 ·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
(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, '20.2월)

붙임 7 |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**

□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

< 신고 대상 >

1.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
2. 최근 14일 이내에 **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** 방문 + **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**이 나타난 자

3. 최근 14일 이내에 **확진환자와 접촉**한 자 + **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**이 나타난 자

4. **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**

5. 최근 14일 이내에 **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* 방문** + **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**이 나타난 자

6. **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**

* 자표출처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자자체용, 제6판)

붙임 8 **입소자(종사자) 모니터링 - 임상증상 기록지**

대상자명	증상	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	6일차	7일차	8일차	9일차	10일차	11일차	12일차	13일차	14일차
예시 OOO	체온	오전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	오후	38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	36.5°C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√	√	√				√			√				
	② 인후통					√	√							√	√	√
	③ 호흡곤란		√	√	√											
	④ 객담		√					√					√			
	⑤ 기타			설사												
	체온	오전														
		오후														
	호흡기 증상															
	① 기침															
	② 인후통															
	③ 호흡곤란															
	④ 객담															
	⑤ 기타	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	___

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

※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 포함

소관부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복지부	노인복지시설	○ 노인주거복지시설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○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○ 재가노인복지시설 ○ 노인여가복지시설 ○ 노인보호전문기관 ○ 노인일자리지원기관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○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「노인복지법」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가능		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	아동복지시설	○ 아동양육시설 ○ 아동일시보호시설 ○ 아동보호치료시설 ○ 자립지원시설 ○ 공동생활가정	○ 아동상담소 ○ 아동전용시설 ○ 지역아동센터 ○ 아동보호전문기관 ○ 가정위탁지원센터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○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○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○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○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○ 피해장애인쉼터	○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○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○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「장애인복지법」
	어린이집		○ 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○ 정신요양시설 ○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○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	노숙인시설	○ 노숙인자활시설 ○ 노숙인재활시설 ○ 노숙인요양시설	○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○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○ 노숙인급식시설 ○ 노숙인진료시설 ○ 쪽방상담소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○ 결핵·한센시설	○ 사회복지관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○ 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○ 다함께돌봄센터	「아동복지법」
여성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○ 일반지원시설 ○ 청소년지원시설 ○ 외국인지원시설 ○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	○ 자활지원센터 ○ 성매매피해상담소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상담소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○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가정폭력상담소 ○ 긴급전화센터	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○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○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 ○ 일시지원복지시설	○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○ 건강가정지원센터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○ 청소년쉼터 ○ 청소년자립지원관 ○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○ 청소년회복지원시설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